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4. 11.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 이유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예정)에 따라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 기준과 감면 규정을 구체화하는 등 그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정수급액 추가징수의 구체적 기준 마련(안 제11조제1항 신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적발 횟수, 공모여부에 따라 추가징수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함

나. 부정수급 추가징수액 감면 기준 확대(안 제11조제2항 신설)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한 경우 외에도 사소한 부주의·오류, 동기·결과 등을 고려하여 추가 징수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기준을 확대·정비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과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목 외 본문을 제3항으로 한다.

①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추가징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반환명령을 받은 자가 최근 위반 행위 적발일 이전 5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신청한 건수가 3회 미만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금액(이하 “부정수금액”이라 한다)의 1배. 다만, 부정지원·신청건수에 학습근로자 등과 학습기업 또는 공동훈련센터가 공모하거나 학습기업과 공동훈련센터가 공모(이하 “공모”라 한다)한 건수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정수금액의 3배로 한다.

2. 부정지원·신청건수가 3회 또는 4회인 경우: 부정수금액의 2배. 다만, 부정지원·신청건수에 공모한 건수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정수금액의 4배로 한다.

3. 부정지원·신청건수가 5회 이상인 경우: 부정수금액의 3배. 다만, 부정지원·신청건수에 공모한 건수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정수금액의 5배로 한다.

② 영 제16조제4항에 따른 추가징수 감면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36조에 따른 지도·점검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추가징수 금액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추가징수 금액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규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일학습병행에 대한 지원금 반환 명령 및 추가징수 통지서) <u>< 신 설 ></u>	제11조(일학습병행에 대한 지원금 반환 명령 및 추가징수 통지서) ①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추가징수 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반환명령을 받은 자가 최근 위반 행위 적발일 이전 5년 동안 거짓 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신청한 건수가 3회 미만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금액(이하 “부정수금액”이라 한다)의 1배. 다만, 부정지원 · 신청 건수에 학습근로자 등과 학습기업 또는 공동훈련센터가 공모하거나 학습기업과 공동훈련센 터가 공모(이하 “공모”라 한다)한 건 수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정 수금액의 3배로 한다. 2. 부정지원 · 신청건수가 3회 또는 4

회인 경우: 부정수급액의 2배. 다만, 부정지원·신청건수에 공모한 건수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4배로 한다.

3. 부정지원·신청건수가 5회 이상인 경우: 부정수급액의 3배. 다만, 부정지원·신청건수에 공모한 건수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5배로 한다.

< 신 설 >

② 영 제16조제4항에 따른 추가징수 감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6조에 따른 지도·점검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일학습병행
지원금 환수·추가징수 통지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 신 설 >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지원받은 사실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추가징수
금액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
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추가징수
금액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명
백히 인정되는 경우

③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규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
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개정규정
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
른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	
연 락 처	(044) 202 - 7273